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4.10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상도동 159-250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/ 동작구 상도동 159-250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8-07-1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< 건축 분야 >

□ 건축계획

- 공공보행통로의 공공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.
 - 서측 공공보행통로 진입부 단차(61.5m~67m)와 보도의 높이(65m)를 고려하여 사업부지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와 최소한의 단차로 단지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.
 - 공공보행통로의 서측 진입부분과 남측 인접공원과의 연결 동선은 경사로도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.
- 계단식으로 배치된 급격한 레벨차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계획 바람.
- 북측 입면 디자인은 대안2로 하고, 벽면 컬러의 변화를 추가로 계획 바람.
- 주출입구 부분은 밝은 색채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마감재 계획 바람.
- 경로당의 중정 부분의 조경면적을 줄여 이용자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.
-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(387.77㎡)의 면적을 용적률 완화 인정하고,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4㎡A·B형, 84㎡A·B형, 110㎡B형에 대하여 5%, 110㎡A형에 대하여 10% 완화 인정함.

□ 방재

- 비상차량 동선을 재계획하였으나, 일부 경로에서는 조경 등에 의해 장애를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대지레벨을 고려하여 이런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바람.

- 계속 -

2018.4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4.10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상도동 159-250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/ 동작구 상도동 1 59-250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8-07-1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

< 건축 분야 >(계속)

□ 조경

- 주거동 옥상에도 최저 비용의 녹화 계획이 반영되도록 검토 바람.
- 실외 주민운동시설(탁구대, 당구대 등) 설치하는 날씨에 영향이 없도록 지하공간에 설치 바람.

< 공통사항 >
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
 - 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
 - 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1등급,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,
 - 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3.27%, 비주거 7.34% 적용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
 -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
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18.4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